



#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 현황 및 고도화 방향

임준 연구위원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경우 주로 단순한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만 이루어지고 있음.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이전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이후에 이루어져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가 제한적임. 향후 조직적 보험사기와 같은 복잡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시점도 보험금 지급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사기방지체계는 크게 ‘인지 → 조사 → 수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사기 의심 건을 인지하게 되면, 보험회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후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단계임.
- 인지, 조사, 수사의 3단계 가운데, 본고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인지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시스템의 한계 및 고도화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함.

■ 현재 보험사기 인지를 위한 모니터링은 보험회사와 금융당국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급심사팀에서 보험사기 인지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담당자의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의존하고 있음.
  - 보험사기 의심 건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① 이전에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계약자의 청구 건이나 ② 비록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큰 청구 건임.
- 보험회사 이외에 금융당국에 의해서도 보험사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패턴을 보이는 병원이나 자동차정비업체를 찾아내는 방식임.

■ 현행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Sparrow(2000)의<sup>1)</sup> 의료보험사기

1) Malcolm K. Sparrow(2000), *License to Steal*.

모니터링 7단계를 인용하고자 함(표 1) 참조).

- Sparrow(2000)가 다단계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이유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임.
  -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사람들이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개별 건(레벨 1)별로 볼 때는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지만 지역별(레벨 6(b)) 비교분석을 실시할 경우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음.<sup>2)</sup>

〈표 1〉 의료보험사기 모니터링 7단계

단계	설명
레벨 1	Claim Level: 개별 청구건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 가능한 보험사기 사례에는 남자가 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갓난아이가 정신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됨
레벨 2	One Patient/One Provider Relationship: 의사의 전공분야와 환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치료빈도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나는지 모니터링
레벨 3	(a) Patient Level: 환자별 진료/청구 관련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 색출
	(b) Provider Level: 의사별로 의료행위 관련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 색출
레벨 4	(a) Patient Group(covered by One Policy)/One Provider: 하나의 보험에 의해 그룹화되는 여러 명의 환자와 한 명의 의사 간 관계
	(b) One Patient/One Practice(which may involve Several Providers): 병원의 사무장이 특정 환자에 대한 사기의료행위를 병원 내 여러 의사에게 분산시키는 경우가 해당됨
레벨 5	One Policy/One Practice: 레벨 4(a)와 레벨 4(b)가 결합된 형태
레벨 6	(a) Defined Groups of Patients: 특정 환자 그룹(예,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요양원)의 의료행위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냄
	(b) Defined Groups of Providers: 여러 명의 의사가 공모하여 자신의 환자를 서로 다른 의사에게 보내는 사기의료행위가 해당됨
레벨 7	Multiparty, Criminal Conspiracies: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에 의한 의료보험사기로 관련 환자나 병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자료: Malcolm K. Sparrow(2000), *License to Steal*.

■ Sparrow(2000)의 모니터링 7단계 관점에서 평가한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레벨 1과 레벨 3 수준임.

- 보험회사 지급심사팀의 모니터링은 〈표 1〉의 레벨 1과 레벨 3(a)에 해당되고,<sup>3)</sup> 금융당국의 병원 및 자동차정비업체 조사는 레벨 3(b)에 해당됨.

2) 약 400여 명이 가담한 2011년의 태백지역, 그리고 1,300여 명이 관련된 2012년 경남지역 대규모 보험사기가 특정지역 보험사기의 예라고 볼 수 있으며, 〈표 1〉의 레벨 6(a)에 해당됨.

3) 청구금액이 큰 경우를 보험사기 의심 건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레벨 1에 해당되고, 보험계약자의 과거 청구 이력이 많은 경우 보험사기 의심 건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레벨 3(a)에 해당됨.

- 레벨 1과 레벨 3 위주의 모니터링 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은 레벨 6이나 레벨 7 모니터링 단계의 비정상적 패턴 색출이 어렵다는 점임.
  - 또한, 금융당국의 레벨 3(b) 모니터링은 보험금 지급 이전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이후의 모니터링이라는 한계가 있음.<sup>4)</sup>
- 따라서 보험사기를 조기에 적발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레벨 1 또는 레벨 3과 같은 단순 유형을 넘어 레벨 6이나 레벨 7과 같은 복잡한 유형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함.
  - 둘째, 모니터링 시점을 보험금 지급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김. [kiri](#)

4)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경우 회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 모니터링은 사전 모니터링에 비해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가 제한적임.